

학생생활상담연구소 규정(4-2-2)

최종개정일 : 2016.11.10.

제1장.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위치) 본 연구소는 건양대학교 부설 학생생활상담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)라 칭하며 건양대학교 내에 둔다.(개정 2013.03.28.)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학생 각자가 대학생활을 통하여 직면하는 학업, 인간관계, 가치관 정립, 합리적 선택, 적응력 육성 등에 관한 문제들을 도와 학생생활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 되도록 하며 학생 각자의 능력개발과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사업) ① 연구소의 사업대상은 학생, 교직원과 그 가족, 지역사회 주민까지 포함할 수 있다.(개정 2013.03.28.)

②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(개정 2013.03.28)

1. 개인·집단 상담, 사이버상담
2. 각종 검사 및 그 결과의 해석
3.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
4. 학생지도를 돕는 연구 및 연구지 발간
5. 삭제(2016.11.10.)
6. 신입생, 재학생 실태조사 및 분석
7. 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수련 활동
8. 장애학생 및 유학생 대상 상담 서비스 제공
9. 기타 필요시 출장상담소 운영

제2장. 조 직

제4조(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총괄한다.

②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조직) ① 연구소에 상담·연구부, 진로지도부, 심리검사부를 둔다.(개정 2013.03.28)

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각 부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각 부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개정 2013.03.28.)

1. 상담·연구부 : 개인·집단상담 및 기타 학생들의 자아성장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성과 발표
2. 진로지도부 : 학생들의 진로에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연구
3. 심리검사부 : 학생들의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그 결과 해석

④ 삭제(2013.03.28.)

제6조(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상담원 및 연구원 등) ① 본 연구소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 및 연구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.(개정 2013.03.28.)

② 상담원 및 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3.03.28.)

③ 삭제(2013.03.28.)

제8조(수련생) ① 연구소에는 본 대학교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의 상담교육을 위하여 수련생을 둘 수 있다.(신설 2013.03.28.)

② 수련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(신설 2013.03.28.)

제3장. 운영위원회

제9조(설치) 본 연구소는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 (임기)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(신설 2013.03.28.)

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기본운영계획
2. 연구계획

3. 연구과제의 심의 및 심사
4. 연구소 내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
6.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
7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,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.(신설 2013.03.28.)
 ②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연다.(신설 2013.03.28.)
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신설 2013.03.28.)

제14조 삭제(2016.11.10.)

제4장. 재 정

제15조(재원) 연구소의 재원은 교비, 개인 및 단체의 찬조금, 위탁연구비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6조(연구보조비) 상담원 및 연구원의 연구보조비 및 여비 등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3.03.28.)

제17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8조(보고) 연구소의 예·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5장. 보 칙

제19조(연구소 이용 학생의 권리 및 정보의 관리) ① 연구소를 이용하는 학생은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하고, 상담 계획에 참여하며,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고, 특정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. (신설 2013.03.28.)
 ② 연구소를 이용하는 학생의 사적인정보와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되, 학생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도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. (신설 2013.03.28.)

③ 상담과 관련된 제반 기록은 연구소의 전문기록으로서 본 연구소에서 3년 동안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는 파기한다. (신설 2013.03.28.)

제2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별도로 정한다. (신설 2013.03.28.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